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대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58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문대림・주철현・윤준병

송옥주 · 임호선 · 임오경

황명선ㆍ김 윤ㆍ이병진

서삼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·시행하고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과잉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쌀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쌀값이 불안정해지고 있음. 이에 따라 정부는 쌀값 상승을 유도하고 농가의 소득을 다양화하기 위해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고,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쌀을 선제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미곡과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미곡의 수급안정 및 선제적수급조절 등을 규정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 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(안 제16조).
- 나.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(안 제16조).
- 다.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·시행,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·시행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(안 제16조의3 신설).
- 라. 미곡의 수급안정과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16조의4 신설).
- 마.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).

법률 제 호
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한다.
- 1.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: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.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.
- 2.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

경우: 정부관리양곡의 판매

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입가격과 매입규모, 매입방법 등에 대하 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3(양곡수급관리위원회)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 - 2.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 - 3.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·판매여부, 매입·판매물량, 매입·판매시기 및 매입·판매가격
 - 4.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
 - 5.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
 - 6.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 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
 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다.

-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- 1.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
- 2.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
- 3.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
- 4.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
-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
- 2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
- 3. 학계,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
-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의4(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)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

표와 연계하여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(이하 "논타작물"이라 한다)의 재배 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,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, 시설장비 지원,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6조의5(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·수요·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·분석·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 ·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,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 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 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의6(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)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 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
 - 2.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
 - 3.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
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
수급 관리) ① 농림축산식품부
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
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
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
안정대책을 수립・시행할 수
있다.
1.・2. (생 략)

- <신 설>
- ② · ③ (생 략)
-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수있다.

개 정 안

제16조(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) ① -----

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 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1.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4제1 항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 감 축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⑤ ~ ⑦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: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 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.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 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.

- 2.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: 정부 관리양곡의 판매
- ⑤ ~ ⑦ (현행과 같음)
-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 는 매입가격과 매입규모, 매입 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6조의3(양곡수급관리위원회)
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
 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
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

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 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<u></u>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- 2.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
- 3.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 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·판매 여부, 매입·판매물량, 매입· 판매시기 및 매입·판매가격
- 4.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

 면적의 조정
- 5.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및 계획
- 6.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자관이 되며, 위원은 당연

- 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 성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- 1.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 정책관
- 2.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
- 3.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
- 4.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 측본부장
-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 산자단체 대표
- 2.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
- 3. 학계, 연구계 등에서 양곡

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

 전문성을 가진 사람
- 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

<신 설>

-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의4(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) ① 농 립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 급안정을 위하여 미곡 재배면 적 감축 목표 및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한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(이하 "논타작물"이라 한다)의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,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·시행하여야

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 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 단지 조성, 시설장비 지원, 판 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논타 작물 재배지원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6조의5(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 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 ·수요·재고 등 수급과 관련 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

<신 설>

적으로 수집·분석·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 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,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의 구축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6(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)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

<u><신</u> 설>
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지원할 수 있다.

- 1.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

 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

 판매하게 하는 사업
- 2.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손실을 보전하는 사업
- 3.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

 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

 사업